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26 발의연월일: 2021. 7. 15.

발 의 자:김용판·박덕흠·김예지

박대수・조명희・이종성

구자근 · 송언석 · 윤창현

강대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층의 일자리·주거·보육문제 등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경제력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하여 해당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층의 정치참여는 활발하게 이루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배분·지급함으로써 경제력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의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고 청년세대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 3 신설).

법률 제 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① 국가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청년후보자(34세 이하 후보자를 말한다. 이하같다)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이하 "청년추천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5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청년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청 년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청년추천 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
- 1.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추천한 정당에 는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다음 기준에 따라 배분·

지급한다.

- 가. 배분대상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 지급 당시 정당 별 국회의석수의 비율
- 나. 배분대상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 최근 실시한 국 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
- 다. 배분대상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청년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청년후보자수의 비율
- 2.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청년추천보조금은 제1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청년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 3.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제1호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청년추천보조금은 제2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청년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청년추천보조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6조의3(공직후보자 청년추천
	보조금) ① 국가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
	<u>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u>
	<u>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u>
	에서 청년후보자(34세 이하 후
	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추
	천한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
	조금(이하 "청년추천보조금"이
	라 한다)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
	거권자 총수에 50원을 곱한 금
	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시 · 도의회의원선거 또는
	<u>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가</u>
	있는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u>한다.</u>
	② 청년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추
	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에 따라 배분 · 지급한다. 이 경
	우 지역구시 · 도의회의원선거
	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
	의원선거에서의 청년추천보조

금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청년추천보조금 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

- 1.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 수의 100분의 15 이상 추천한 정당에는 청년추천보조금 총 액의 100분의 50을 다음 기준 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 가. 배분대상 청년추천보조금총액의 100분의 40: 지급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비율
 - 나. 배분대상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 표수 비율
 - 다. 배분대상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 각 정 당이 추천한 지역구 청년 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 당별 지역구 청년후보자수의 비율
- 2.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

는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 0분의 30을 제1호 각 목의 기 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청년추천보조금은 제1호에 따 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청년 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 할 수 없다.

- 3.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
 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
 의 2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청년
 추천보조금은 제2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청년수천
 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청년추천보조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후 2일이내에 정당에 지급한다.